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공시송달 지급명령 허용 특례 기관에 근로복지공단 추가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29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 제도 개요 ..... | 3  |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              | 9  |
|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             | 10 |
| 4. 관계 기관의 의견 .....              | 15 |

##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박홍배의원 등 12인
2. 제 출 일 : 2024. 8. 2.
3. 회 부 일 : 2024. 8. 5.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및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 체불조사를 근거로 발급된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근거로 대지급금 지급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고,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기관의 융자 실행 후 연체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를 하는 대위변제 구상금의 성격으로 금융기관 등의 대여금, 구상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함.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지

급금 지급 건수 및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융자 사업의 보증사고 발생이 급증하여 소송대상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지급명령 신청 후 송달불능에 따른 소 전환 비율 또한 증가하여 절차 이용의 실익이 크므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 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업무량을 경감하고, 비용,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 Ⅲ. 검토의견

#### 1.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 제도

##### 가. 「민사소송법」 원칙

「민사소송법」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sup>1)</sup>.

지급명령은 법정에서의 대면 심리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sup>2)</sup>.

---

##### 1) 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 2) 민사소송법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즉 채권자에게는 지급명령이 신속한 해결 수단이지만, 채무자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권원이 발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명령에서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는 것임.

##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 특례

### (1) 특례 허용 취지

2014년 10월 15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4년 12월 1일 시행)을 통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지급명령 절차의 예외 규정으로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허용함.

금융회사 등의 보증금 채권 등 채권의 존재가 비교적 확실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적은 채권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허용하고 있음<sup>3)</sup>.

채권자가 금융회사 등인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등 채권의 소명이 확실한데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실질적인 재판이 불가능함에도

---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불구하고 수많은 공시송달 사건들에 대해 일일이 일반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허용한 것임<sup>4)5)</sup>.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하거나 답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허용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소송절차에 의하는 경우보다 인지대의 부담 또한 1/10로 줄어들게 됨.<sup>6)</sup>

채무자의 입장에서 공시송달이 있었던 사실을 간과하여 집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이의신청을 추후 보완하여 다시 소송절차로 이행할 수 있고,<sup>7)</sup>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진 경우 이의신청의 추후

---

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780호, 2014. 10.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참고

5)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내용 생략)

제7조(화해신청서 등) 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보완 사실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정지·취소를 구할 수 있음. 또한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도록 하는<sup>8)</sup> 등 현행법상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원인에 대한 증명이 아닌 소명만으로 채무자에게 판결과 동일한 정도의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례조항의 적용범위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2) 법률 개정 연혁

2014년 10월 15일 법 개정(2014년 12월 1일 시행) 당시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 기관을 법에서 직접 열거하는 것으로 하되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특례조항의 허용 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그 후 제한적으로 열거된 지급명령 공시송달 허용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5차례의 법률 개정이 있었으며, 현행법상 법률에 따라 공시

---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② 제1항의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허용하는 기관은 22개 기관임.

당초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허용한 기관은 금융회사 등 금융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성격이 다소 적더라도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며 처분행위 소명이 가능하고 신속한 재판 및 소송비용 절감 등 실익이 큰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sup>9)</sup>.

#### <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 관련 법률 개정 연혁 >

| 연번 | 개정         | 시행        |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 추가 또는 개정                                                                                       |
|----|------------|-----------|-------------------------------------------------------------------------------------------------------------------|
| 1  | '17.10.31. | '18.2.1.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sup>10)</sup> |
| 2  | '21.7.20.  | '22.1.21. |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추가                                                                                         |
| 3  | '23.3.28.  | '23.9.29.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추가                                                                                           |
| 4  | '23.6.13.  | '23.9.29.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추가                                                                                   |
| 5  | '24.1.16.  | '24.4.17.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가                                                                           |

9) 법원행정처 제출자료 참고

10) 유동화전문회사를 현행과 같이 적용대상으로 두되,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는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도를 적용받는 금융기관으로 한정

### <현행법상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 기관>

| 근거규정                                                  | 특례 허용 기관                                                                                                                                                                                                                                                                                                                                                                                                                                                                                                                                                                                                                                                                                                                                                                                                                                                                                                                                                                                                                                                       |
|-------------------------------------------------------|----------------------------------------------------------------------------------------------------------------------------------------------------------------------------------------------------------------------------------------------------------------------------------------------------------------------------------------------------------------------------------------------------------------------------------------------------------------------------------------------------------------------------------------------------------------------------------------------------------------------------------------------------------------------------------------------------------------------------------------------------------------------------------------------------------------------------------------------------------------------------------------------------------------------------------------------------------------------------------------------------------------------------------------------------------------|
| 소 송 측 진<br>등에 관한<br>특례법<br>제20조의2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은행법」에 따른 은행</li> <li>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li> <li>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li> <li>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li> <li>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li> <li>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li> <li>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li> <li>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li> <li>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li> <li>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li> <li>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li> <li>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li> <li>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li> <li>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li> <li>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li> <li>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li> <li>1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li> <li>1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li> <li>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li> <li>19.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li> <li>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li> <li>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li> <li>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21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li> </ol> |
| 소 송 측 진<br>등에 관한<br>특례규칙<br>제17조의<br>2 <sup>11)</su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li> <li>1의2.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li> <li>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법인이 운영하거나 지원·감독하는 신용대출사업자</li> <li>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제18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li> </ol>                                                                                                                                                                                                                                                                                                                                                                                                                                                                                                                                                                                                                                                                                                                          |

11)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허용하는 기관은 4개 기관이며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가 추가된바 있음(2024. 10. 4.).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sup>12)</sup>을 포함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br>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br>① -----<br>-----<br>-----<br>-----<br>-----<br>-----<br>-----<br>-----<br>-----<br>-----<br>-. |
| 1. ~ 21. (생략)                                                                                                                                                                     | 1. ~ 21.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u>                                                                                       |
| <u>22.</u>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u>제21호</u> 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                                                                                                       | <u>23</u> -----<br>----- <u>제22호</u> -----<br>-----                                                                     |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
|-------------------------------|-----------------------------------------------------------------------------------------------------------------------------------------------------------------------------------------------------------------------------|
| <p>하는 자</p> <p>② ~ ⑤ (생략)</p> |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b>부 칙</b></p> <p><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u><br/><u>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관</u><br/><u>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u><br/><u>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u><br/><u>정에 따른다.</u></p> |
|-------------------------------|-----------------------------------------------------------------------------------------------------------------------------------------------------------------------------------------------------------------------------|

###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법에 따르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허용하는 경우는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로<sup>13)</sup> 특례 도입 취지 및 개정 연혁에 따르면, 특례 허용 기관은 ①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보유한 기관이며, ② 해당 기관의 채권이 다수의 정형적인 거래에 의한 채권으로 채권의 신뢰성이 높고, ③ 강제집행이 취소되더라도 환부능력이 충분하여 변제에 문제가 없는 기관으로 볼 수 있음.

#### 1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 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및 채권의 신뢰성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말함)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하여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증채무 이행으로 대위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sup>14)</sup>.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파산하여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에 의해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음<sup>15)16)</sup>. 그 외에도 공단은 동

### 14)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용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용자 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 15)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각 목 생략)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주에 대해 자금을 융자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융자 등의 업무를 수행함<sup>17)</sup>.

즉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후 구상권 또는 대위권 등을 행사하는 등 정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단이 보유한 채권은 다수의 정형적인 거래에 의한 채권으로 채권의 발생이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어 신뢰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음.<sup>18)</sup>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제7조의2(채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채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위 고용노동부장관 권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됨.

16) 체불액 감소로 '21년-'22년 대지급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3년에는 경기불황 등으로 체불액이 급증하여 역대 최대금액인 6,869억원이 지급된바 있음(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

#### ○ 대지급금 지급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구분  | 계      |         |         |
|-----|--------|---------|---------|
|     | 사업장수   | 근로자수    | 금액      |
| '19 | 21,894 | 100,085 | 459,880 |
| '20 | 24,975 | 110,177 | 579,690 |
| '21 | 24,071 | 106,926 | 546,571 |
| '22 | 22,271 | 107,444 | 536,864 |
| '23 | 24,183 | 131,177 | 686,905 |

\* 사업장수: 당해연도에 지원된 사업장 수(동일 사업장이 연도를 달리하여 지급될 경우, 새로운 사업장 수로 산정)

\* 근로자수: 신규로 지급받은 근로자 수(이전연도 동일 사업장 지급이력이 없는 근로자)

#### 17)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8) 신용보증의 경우 개별보증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고,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대지급금의 경우에도 사업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결정이 있거나 판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이 있는

## 나. 근로복지공단의 환부능력

근로복지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고<sup>19)</sup>, 공단의 신용 보증 사업 등의 재원으로 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sup>20)</sup>은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sup>21)</sup>, 근로복지진흥기금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sup>22)</sup>,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모두 기금존치 평가 결과 존치 필요 평가를 받은 바 있음<sup>23)</sup>.

즉 근로복지공단은 다양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지원, 기금의 안정적인 수입 구조 등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취소 되더라도 환부 능력이 충분하여 변제에 문제가 없는 기관으로 평가될 수

---

경우에 지급되므로 채권·채무 관계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함.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24.1.31.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20)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2.-4. (생략)
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 6.-11. (생략)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21) 2024년 기획재정부 기금존치 평가보고서, 2024.5., p.25.

22)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채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 2.- 5. (생략)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23) 2024년 기획재정부 기금존치 평가보고서, 2024.5., p.18, 25, 31, 38.

있는 것으로 보임.

#### 다. 근로복지공단의 지급명령 신청 현황

법원행정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법원에 접수한 독촉사건(지급명령 신청) 접수 건수는 최근 법 개정('23.9.시행)으로 추가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비해 많은 편이며, 2023년에 법원에 접수한 독촉사건 접수 건수는 2022년 대비 2.6배 증가하였음.

이는 채권 회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권 회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속한 채권 회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 독촉사건 접수 현황 >

(단위: 건)

| 대상기관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853   | 770   | 1,535 | 1,439 | 1,975  |
| 근로복지공단     | 2,318 | 2,079 | 1,561 | 4,673 | 12,235 |

자료 ; 법원행정처

#### 라. 소결

개정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특례 기관으로 추가하려는 것은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추

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근로복지공단의 채권 신뢰성, 환부능력 등을 고려하면 특례 기관에 추가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sup>24)</sup>.

#### 4. 관계 기관의 의견

##### 가. 법무부 의견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특례기관 추가는 지급명령 취소시 강제집행된 금원의 환부능력, 공단의 집행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임. 공단이 보유한 대여금·구상금 채권은 은행 등 금융기관처럼 채권·채무관계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한 측면이 있으나 입법론적으로 대법원규칙 개정을 통해서도 공단을 특례기관으로 추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나. 법원행정처 의견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함. 근로복지공단은 금융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고,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하는 사건은 대부분 구상금, 대지급금 청구사건으로 정형적인 거래에 의한 채권이며, 근로복지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신뢰할 수 있고 자력이 충분하며, 대량의 사건을 접수하는 기관이므로 공시독촉 특례적용 대상기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

24) 법무부, 법원행정처 모두 동일한 의견임

것으로 보이며, 특례의 적용대상에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하는 것은 국회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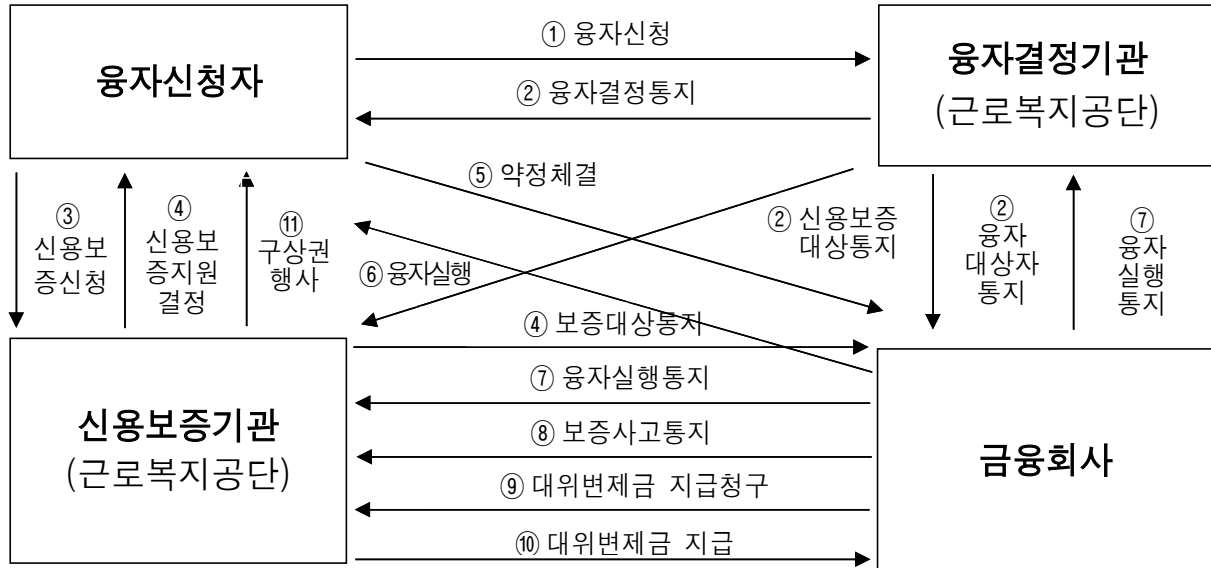
#### 다. 근로복지공단 의견

공단은 법률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근로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양수채권 관리) 및 대지급금 지급·회수(구상권 행사) 등 정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 채권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아니하는 등 본안 심리가 불필요한 채권이므로 공시송달 허용기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포함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소송비용 6억원 상당) 절감 및 업무량 경감, 기금 건전성 제고로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 1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 흐름도

### < 근로자신용보증지원 흐름도 >



자료: 근로복지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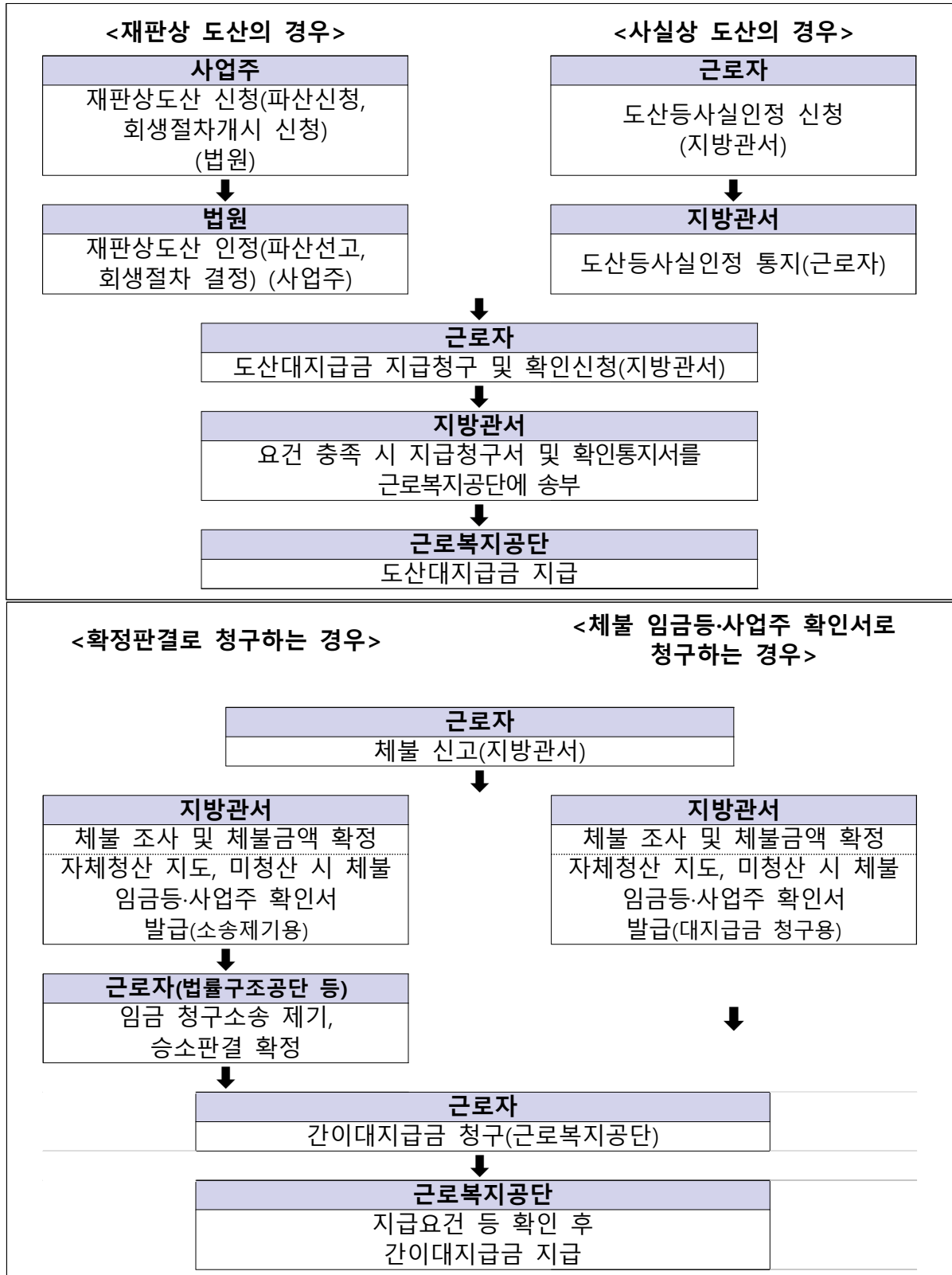
###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대상 사업 >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8조(보증대상 용자사업)

1. 법 제19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용자사업
3.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학자금 용자사업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용자사업,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
5. 삭제 <2011. 1. 4.>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사업
7.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8.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9.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 참고 2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지급 절차



자료 : 근로복지공단

|              |
|--------------|
| 문 의 처        |
| 02)6788-5061 |